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정진술 의원
- 나. 의안번호: 제245호
- 다. 발의일자: 2022. 10. 17.
- 라. 회부일자: 2022. 10. 21.

2. 제 안 사 유

-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, 건물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, 특히 각종 쓰레기의 무단 투기로 인해 배수구가 막혀 그 피해가 더 커지는 측면이 있음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폐기물의 감량·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시,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조제1항)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예산조치: 비대상사유서 별첨
- 나. 기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 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, 재활용, 안전한 처리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시,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- 현행 조례 제10조(시민참여)는 폐기물 관련 시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참여를 독려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, 시민들의 참여 확산에 있어 시민홍보와 교육 또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음.

〈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〉

현행	개정안
제10조(시민참여) ①시장은 폐기물의 감량·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략)	제10조(시민참여) ①----- ----- ----- 하며, <u>이를 위해 필요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.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